

광주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24020(본소), 2020나24037(반소) 판결 [공사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24020(본소), 2020나24037(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1250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규련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1. B

2. 주식회사 C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변론 종결2021. 9. 8.

판결 선고2021. 10. 13.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12507(본소),

2019가합1157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36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1.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보조참가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96,11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7,478,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6,936,852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예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F 대표 G은 2016. 11. 24. G이 여수시 H 외 1필지에 있는 호텔 I(변경 전: J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K 시스템 냉·난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2017. 11. 30.까지 8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G은 2017. 8. 21.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피고에게 이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금액을 862,65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공사기한은 최종적으로 2018. 4. 16.로 연장되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는 원 계약자인 F 대표 G과의 계약해지 후 계약내용의 일체를 피고와 이관계약을 함에 아래의 내용을 특약하기로 한다.

1. 착공허가 시 제출된 F의 도면 및 내역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이후 변경된 도면에 따라 시공 시 해당 감리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2. F의 기술 및 장비납품에 관한 부분은 해당 자재 및 품질에 대하여 품질보증 및 하자책임 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시공 및 비용은 기 계약금에 준하여 최종제출된 도면에 따른다.

다. 피고는 2018. 4. 1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는 ① 냉방용량과 관련한 하자, ② 그 외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그 보수비용은 냉방용량과 관련하여 냉방용량 충족을 위한 시스템에어컨 추가비 413,750,846원, 긴급 에어컨 설치비 47,646,761원 등을 포함한 577,478,873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7,478,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냉방용량을 설계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용량을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냉방용량과 관련한 하자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은 166,881,562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69,944,81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은

96,936,85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6,936,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냉방부하와 관련한 하자(냉방용량 충족을 위한 비용, 긴급 에어컨 설치비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목적물이 설계도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부하는 12,385,816Kcal인데, 이 사건 설비의 1일 최대 냉방부하는 6,128,000Kcal로,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호텔 1일 최대 냉방부하의 47.65%만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 19, 39 내지 43,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19. 11. 21.자, 2020. 4. 14.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 대표 G은, G이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납품, 설치하고 그 전제로 그에 필요한 설계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서 정한 1일 최대 냉방부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것이 이 사건 설비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설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설비의 설치, 설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바, F 대표 G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 측에 이 사건 설비 설치에 관한 도면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N건축사사무소(대표자는 원고보조참가인 B이다)와 N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작성하였다. 제1심 감정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은 특허공법이 필요한 이 사건 설비의 설계자료를 G으로부터 받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G이 이 사건 설비 설치에 관한 도면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착공허가 시 제출된 F의 도면 및 내역으로 계약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승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 납품, 설치에 필요한 설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G은 이 사건 호텔과 같은 시설은 통상 24시간 냉방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호텔의 냉방부하를 1시간당 600,000Kcal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1일 냉방 시간을 10시간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호텔의 1일 냉방부하를 6,000,000Kcal(= 600,000Kcal × 10시간)로 집계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호텔에 필요한 설비의 용량을 6,128,000Kcal(= 766,000Kcal × 8대)로 산정하였다. 즉 G은 냉방시간을 호텔영업에 적절하지 않은 10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뿐, 이 사건 호텔의 1일 냉방부하를 계산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 전체에 관한 냉방시설을 설계·설치하는 때에는 냉방시설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최대 냉방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이 사건 설비 외 다른 냉방시설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G은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부하를 충족하는 냉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부하를 충족하는 냉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통상의 품질 보증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설비의 냉방용량 충족은 통상의

품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책임이 발생함은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는 설계자인 N건축사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C의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설계에 문제가 있어 냉방용량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G이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부하를 충족함을 전제로 원고 측에 도면 등을 제공하여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1일 최대 냉방용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로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413,750,846원(빙축열에 더하여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원고가 냉방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냉방을 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긴급하게 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은 47,646,76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각 비용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어컨 긴급설치비용 47,646,761원이 추가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에어컨 긴급설치비용의 지급은 냉방부족이라는 하자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반면, 향후의 추가 냉방설비 설치비용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그 성질을 달리하고, 제1심 감정인도 이를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외의 하자에 관한 판단

갑 제11,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19.

11. 21.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의 합계는 63,586,19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시공 및 변경시공,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없으나 장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	8,421,733
냉매배관, 축열조 내부의 부식, 파손여부	1,215,807
열교환배관의 사양미달 여부, 급수와 환수 온도차이가 정상수준인 10℃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	4,964,169
8번 축열조의 열교환배관 설치 여부	1,038,511
1번, 2번, 3번, 8번 축열조의 배수용배관(이른바 'Drain')밸브의 설치 여부	1,619,761

미시공 및 변경시공,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없으나 장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	8,421,733
각 축열조의 온도계, 압력계, 온도센서, 진동방지를 위한 이른바 Flexible 방진고무, 동배관 Support, 수위조절밸브 케이블선 설치 여부	5,075,529
J 호텔 M호 팬코일유니트가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796,122
빙축열탱크와 호환되는 축열조 실외기의 용량 및 실외기의 증발기 계통의 문제점 점검	10,781,956
축열조와 순환되는 보일러까지의 배관연결 방식(기존 방식의 문제점 점검)	5,670,176
축열조 실외기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식의 문제점 점검	3,699,648
인버터 보일러 중 3번 온수보일러(탱크) 정상 설치 여부	906,091
인버터 펌프 납품 여부	14,138,689
감리자에게 제출한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는 탱크 내 설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열교환장비 설치 여부, 헤더 설치 여부 등)	5,257,999
합계	63,586,191

다.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 등의 합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4,983,798원(= 413,750,846원 + 47,646,761원 + 63,586,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도 청구하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가) 추가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19. 11. 2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액 129,710,517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실내기 추가설치	12,068,529
2	각층(지하층~12층) 주관배관, 가진관 배관에 보온재를 25T에서 32T, 40T로의 교체	23,461,877
3	각층(지하층~12층) 출입구 불밸브 추가 시공	7,250,083

1	실내기 추가설치	12,068,529
4	추가 신축이음(3층 4개) 시공	3,944,282
5	기계실 판형 열교환기 설치 시공	26,804,000
6	3, 4층 누수로 인한 재배관 설치 등 추가 보수작업	5,815,000
7	3, 4층 실내기 이전설치(안쪽→창쪽→안쪽)	10,000,000
8	각층 실내기 온수계량기 부착	8,944,043
9	지하온수탱크 연결배관 추가 시공	12,495,659
10	빙축열 3기를 3층에서 지하로 이전설치	18,927,044
합계	129,710,517	

(2) 피고는 원고가 인버터 펌프 2대를 교체해달라고 하여 인버터 펌프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에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인버터 펌프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버터 펌프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에 인버터 펌프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142,618,568원(= 추가공사대금 129,710,517원 + 부가가치세 12,971,0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순번 1 내지 4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순번 1, 2에 관하여 설치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순번 3에 관하여는 기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순번 4에 관하여는 피고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번 1, 2에 관한 추가공사비용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순번 3, 4에 관하여 설계도면,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로

본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번 5, 9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라 온수탱크 용량 10,000L 3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임의로 용량 5,000L의 온수탱크 6대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18, 19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임의로 온수탱크 6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사내역서와는 다르게 온수탱크 6대를 설치하도록 기재된 설계도면에 따라 온수탱크 6대를 설치한 것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협의에 따라 기계실 판형 열교환기 설치비용으로 26,804,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번 6, 7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호텔 3, 4층 누수는 피고 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3, 4층의 실내기 이전설치 비용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순번 6은 5,815,000원, 순번 7은 10,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순번 8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온수계량기를 P에 도급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순번 10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G이 추가비용 없이 방축열 3기를 지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2018. 4. 16. 무렵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완성일인 2018. 4.

16.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은 2018. 4. 16.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2020. 6.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양 채권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142,618,568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4. 16.에 소급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524,983,79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1),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82,365,230원(= 524,983,798원 - 142,618,568원)이 남게 되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365,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승주

판사이수영

판사강문경

- 1)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동일하므로,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상계충당 된다.